

kiri Weekly

2015.11.23 제360호

이슈

주요국 테러보험제도 운영현황과 국내 시사점

포커스

Cash Balance형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 필요성 검토

글로벌 이슈

유럽 주요국 보험시장의 회복세와 규제 현안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변철성 수석담당역 / 02-3775-9115)



주요국 테러보험제도 운영현황과 국내 시사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

요약

- 2000년대에 들어 국가적, 정치적, 종교적 신념의 이해관계로 테러가 빈번히 발생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 공포감이 확산되는 등 테러리스크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2001년의 911테러와 최근에 발생한 러시아 항공기 추락과 파리의 연쇄테러는 테러리스크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 우리나라의 테러리스크는 OECD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테러방지 국제적 협조관계 형성과 빈번한 테러 위협신고 건 등으로 테러의 안전지대로 보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11월 18일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여 운영하고 있고 대테러방지법의 제정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 테러리스크가 화재 등 일반적인 담보리스크와 달리 사고발생의 우연성과 손해심도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911테러로 확인됨에 따라 상공업물건 계약의 테러보험 구입이 어렵게 되었으며, 각국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인 테러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향후 테러보험제도를 정책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미 운영하고 있는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의 제도를 검토하여 국내의 상황에 부합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테러보험제도는 자연재해정책보험과 달리 거대사고이므로 국가재보험과 풀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생화학, 핵, 방사능, 사이버에 대해서는 선택적 담보로 검토
 - 테러보험상품은 독립된 상품개발보다는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화재보험, 종합보험에서 테러담보를 추가하는 것이 상품관리와 보유 등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1. 검토배경



- 최근 러시아 항공기의 추락, 프랑스 파리에서의 연쇄 테러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야기하였고 전 세계에 테러 공포를 확산시켜 국내외적으로 테러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국내의 경우에도 대테러방지법의 제정 논의가 확산되고 11월 18일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전환하여 만일의 테러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테러리스크는 보험관점에서 보면 일반 화재사고 등과 달리 사고발생이 의도적이고 손해심도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면책특약을 첨부하거나 인수한도를 낮추고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여 특별한 리스크로 관리하고 있음.
 - 이러한 경향은 2001년 429억 달러라는 거대손해가 발생한 911테러 이후 더욱 확대되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다수 선진국가들이 정책적으로 테러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에는 911테러 이후 대부분의 상공업물건의 보험종목에서 테러면책조항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어 보험을 통한 테러리스크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요국의 테러보험제도의 운영체계는 국내 시사점이 될 수 있음.
 - 이를 위해 테러리스크와 일반 담보리스크의 차이와 특성을 살펴보고,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테러보험제도에서 담보하는 테러방법, 국가 재보험담보 제공과 한도, 운영방법 및 기구 등을 비교하여 국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테러리스크의 특징



- 테러(terror)는 사전적으로 “① 폭력을 사용하여 적이나 상대편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¹⁾ 또는 ② 어떤 대상에 폭력을 사용하여 위해를 가하거나 공포에 빠뜨리는 행위”로 정의되며,²⁾ 테

1) 민중서림, 『민중 엡센스 국어사전』, p. 1951.

2) 군사적인 개념으로 테러는 “주권 국가 또는 특정 단체가 정치, 사회, 종교, 민족주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러리즘(terrorism)은 폭력에 호소하는 정치상의 주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자 간의 차이가 있음.

- 미국을 비롯한 OECD국가들의 경우 테러의 개념을 정의하고 폭력행위의 수단과 방법별로 보험보장여부를 명시하는 형태로 테러보험(terrorism insurance)을 운영하고 있음.

■ 테러리스크는 테러로 인해 경제주체의 재산과 신체 등에서 손해를 입을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OECD국가들의 테러리스크 정도(terrorism index)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14년의 한국의 리스크지수는 일본(121위)보다 낮은 124위이며 뉴질랜드, 핀란드, 폴란드 등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표 1〉 2014년 OECD국가의 테러리스크 지수 및 발생현황

(단위: 횟수, 명)

| 국가 | 리스크 지수 | 세계 순위 | 테러 건수 | 사망자 수 | 국가 | 리스크 지수 | 세계 순위 | 테러 건수 | 사망자 수 | 국가 | 리스크 지수 | 세계 순위 | 테러 건수 | 사망자 수 |
|------|--------|-------|-------|-------|-------|--------|-------|-------|-------|-------|--------|-------|-------|-------|
| 터키 | 5.98 | 17 | 34 | 57 | 스페인 | 1.84 | 69 | 5 | 0 | 포르투갈 | 0.23 | 105 | 0 | 0 |
| 멕시코 | 4.66 | 32 | 4 | 40 | 캐나다 | 0.95 | 84 | 3 | 0 | 에스토니아 | 0.16 | 109 | 0 | 0 |
| 미국 | 4.71 | 30 | 9 | 6 | 스위스 | 1.34 | 77 | 2 | 0 | 아이슬란드 | 0.08 | 113 | 0 | 0 |
| 영국 | 5.17 | 27 | 131 | 3 | 덴마크 | 0.19 | 107 | 1 | 0 | 헝가리 | 0.07 | 116 | 0 | 0 |
| 그리스 | 4.73 | 29 | 53 | 2 | 노르웨이 | 3.57 | 44 | 0 | 0 | 일본 | 0.01 | 121 | 0 | 0 |
| 이스라엘 | 4.66 | 32 | 28 | 2 | 스웨덴 | 1.07 | 82 | 0 | 0 | 핀란드 | 0 | 124 | 0 | 0 |
| 칠레 | 2.59 | 58 | 4 | 2 | 독일 | 1.02 | 83 | 0 | 0 | 뉴질랜드 | 0 | 124 | 0 | 0 |
| 체코 | 0.81 | 85 | 1 | 1 | 네덜란드 | 0.58 | 89 | 0 | 0 | 폴란드 | 0 | 124 | 0 | 0 |
| 아일랜드 | 3.09 | 47 | 24 | 0 | 벨기에 | 0.53 | 93 | 0 | 0 | 슬로바키아 | 0 | 124 | 0 | 0 |
| 이탈리 | 2.55 | 62 | 7 | 0 | 호주 | 0.41 | 95 | 0 | 0 | 슬로베니아 | 0 | 124 | 0 | 0 |
| 프랑스 | 2.67 | 56 | 5 | 0 | 오스트리아 | 0.24 | 103 | 0 | 0 | 한국 | 0 | 124 | 0 | 0 |

주: 리스크지수는 과거 테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손해 등을 고려하여 10(이라크)을 최고로 산출한 것임.
 자료: Institute for Economic & Peace(2014), pp. 8~9; Global Terrorism Index 2014, p. 35 이용하여 재작성.

■ 또한 테러리스크는 사고발생의 우연성 및 발생빈도, 발생 손해의 광범위성 등에 있어 화재 등 일반적 인 사고와 다른 특성이 있음.

- 테러리스크는 테러행위 그 자체에 국한하여 보면 고의적인 행위이나 그로 인한 손해발생은 우연성이 있으며 리스크관리기법을 이용하여 방지 또는 회피 등 관리가 가능함.
 - 예를 들면 테러발생이 빈번한 국가에 여행을 가지 않고 안전한 국가로 가는 것을 들 수 있으며, 미국이 자국 내 테러 용의자를 입국시키지 않기 위해 지문채취와 동공사진 촬영 등 입국통제방법도 리스크방지의 예에 해당됨.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의 사용을 협박함으로써 특정 개인, 단체, 공동체 사회, 그리고 정부의 인식 변화와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는 상징적, 심리적 폭력 행위의 총칭”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국방과학기술품질원(2011),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 테러리스크로 인한 손해 유형은 통상적으로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기업휴지 등 간접손해, 인적 손해가 있으며 이 같은 손해는 개별적 또는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표 2〉 테러리스크가 보험종목별 손해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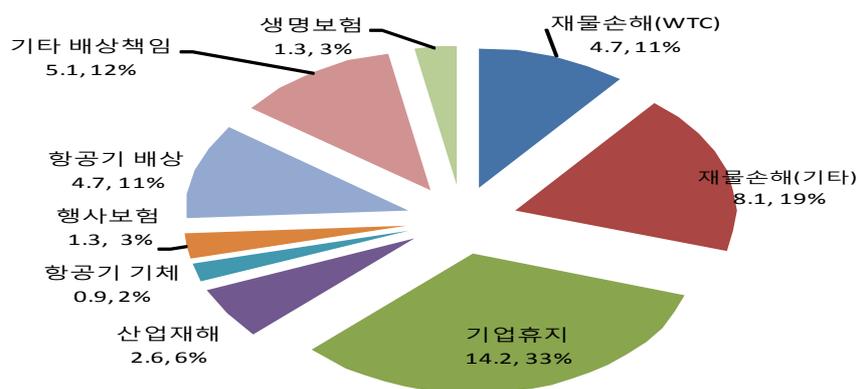
| 폭력방법 | 재물 및 배상책임보험 | 기업휴지보험 | 산업재해보험 | 건강보험 | 생명보험 |
|--------|-------------|--------|--------|------|------|
| 무장공격 | ● | ● | ○ | - | ● |
| 방화/소이탄 | ● | ● | ○ | - | ● |
| 생물학작용제 | ○ | ● | ● | ○ | ● |
| 화학작용제 | ○ | ● | ● | ○ | ● |
| 재래식폭탄 | ● | ● | ● | ○ | ● |
| 사이버공격 | ○ | ● | - | - | - |
| 위험물질방출 | ○ | ● | ● | ○ | ● |
| 핵무기 | ● | ● | ● | ○ | ● |
| 방사능제 | ○ | ● | ● | ● | ● |
| 감시 | - | ● | - | - | - |
| 무단침입 | - | ● | - | - | - |

주: ●는 가능한 관계, ○는 잠재적인 관계를 의미함.

자료: Willis North America(2013), "THE TERRORISM RISK INSURANCE PROGRAM AUTHORIZATION ACT", p. 3.

- 2001년 911테러는 다양한 보험종목에서 429억 달러의 보험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며, 2015년 11월에 발생한 프랑스 파리 도심에서의 테러는 인적손해 중심으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됨.
 - 911테러의 보험 손해액 비중을 보면, 건물과 항공기 재물손해 32%, 인적손해 3%, 배상책임손해 23%, 기업휴지 등 간접손해는 36%임(〈그림 1〉 참조).

〈그림 1〉 911테러의 손해유형 현황 및 손해액(2009년 기준, 십억 달러)



주: 1) 2013년 기준으로 환산한 것임.

2) 총액에는 뉴욕시가 2010년 10,000명의 Ground Zero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657.5백만 달러가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2015), "Terrorism Risk and Insurance"(<http://www.iii.org/issue-update/terrorism-risk-and-insurance>).

- 테러리스크는 고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발생 빈도가 화재나 자동차 사고와 다르게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더라도 사고발생확률 예측이 어려우며 거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테러리스크는 보험으로 전가하여 관리해야 할 리스크이지만 대규모의 테러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대폭적으로 인상하고 인수한도(보상한도)를 크게 낮추거나 인수거절을 하게 되어 보험가용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예를 들면 시카고 O'Hare공항은 911테러 이전에 750백만 달러의 보험금액에 대해 보험료 12.5만 달러의 보험료를 내었으나 테러 후에는 150백만 달러에 대해 6.9백만 달러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금문교의 경우에는 911테러 이후 테러리스크를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고 테러리스크 이외의 담보에 대한 보상한도액이 125백만 달러에서 25백만 달러로 크게 낮추어졌으며 보험료도 50만 달러에서 1.1백만 달러로 크게 인상되었음.³⁾
- 911테러 이후 보험회사들이 테러보험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수하거나 담보에서 제외함에 따라 테러리스크가 큰 국가들은 정부주도의 테러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리스크관리하고 있음.
- 현재 테러보험제도를 임의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2002⁴⁾), 오스트리아(2002), 벨기에(2008), 독일(2002), 네덜란드, 스위스(2003), 영국(1993), 러시아, 대만, 남아공, 핀란드, 벨기에, 덴마크, 홍콩이 있음.⁵⁾
 - 이에 비해 호주(2003), 프랑스(2002), 스페인(1941), 이스라엘(의무)은 의무가입형태의 테러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에는 911테러 발생 이후 재물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에 대하여 전쟁 및 테러면책 특약(war and terrorism exclusion)⁶⁾을 신설함에 따라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 경기장 등 대규모 수용시설물에 대한 공동인수풀 형태의 테러보험제도⁷⁾를 한시적으로 운영한 바 있음.
- 현재는 정부주도의 테러보험제도가 없는 상태이며, 공항 등 대규모 시설의 계약자들은 선별적으로 테러 보험담보를 구매하고 있음.

3) Erwann Mickel-Kerjan and Burkhard Pedell(2005), "Terrorism Risk Coverage in the Post-9/11 Era: A Comparison of New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France, Germany, the U.S.", *Geneva Paper*, 30, p. 152.

4) 테러보험제도 시행연도를 의미함.

5) MARSH(2014), *2014 Terrorism Insurance Report*, p. 22.

6) 재산종합보험의 경우 테러행위를 정치적 목적을 위한 폭력의 사용을 의미하며 대중 또는 대중의 일부를 공포에 빠뜨릴 목적으로 행한 폭력행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면책특약을 첨부하고 있음.

7) 국내 테러보험 풀의 보상한도액은 1사고당 재물손해 150억 원, 인적손해 100억 원이었음. 파이낸셜타임즈(2014. 2. 23), "국제사회, 정책성 테러보험 니즈 높아져".

3. 프랑스, 미국 등 주요국의 테러보험제도 운영현황



가. 미국⁸⁾

- 미국의 경우 2001년 이전에는 자발적인 테러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으나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보험시장의 경색화로 정부와 보험회사가 협력하는 테러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911테러 이후 미국 45개주가 산재보험이외의 보험에서 테러리스크의 부담보를 인가함에 따라 계약자들은 낮은 보상한도와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여 테러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음.
 -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2002년 중간선거 이후 테러리스크보험법(Terrorism Risk Insurance Act of 2002, 이하 “TRIA”라 함)에 대한 논의가 급속히 진행되어 2002년 12월에 제정되었음.
 - TRIA는 정부와 민간보험회사가 파트너십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체계이며, 정부는 연간 1,000억 달러를 최고한도로 보장하며 시행일 이후 3년마다 검증하여 보험제도를 재연장하고 있으며 2015년 1월에 세 번째 연장하여 2020년까지 운영됨.
- 테러보험제도는 상업용자동차, 도난 및 강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임원배상 제외), 농업보험을 제외한 상업용손해보험(commercial property & casualty) 등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임의적으로 가입하며, 테러리스크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재무성 장관이 테러행위(act of terrorism)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됨.
 - 재무성장관은 테러로 인한 총손해액 500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에 국토보안성장관, 검찰총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며, 2007년까지는 외국인 또는 외국국가를 위한 개인 또는 단체가 행한 테러에만 한정하였으나 2008년 개정 시 국내외 테러 구분을 삭제하여 테러행위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였음.
 - 테러를 위한 폭력수단에는 생화학약제 사용, 핵 사용, 방사능제 사용은 선택적 담보가 가능하나 사이버테러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8)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테러보험제도는 Erwann Mickel-Kerjan and Burkhard Pedell(2005), "Terrorism Risk Coverage in the Post-9/11 Era: A Comparison of New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France, Germany, the U.S.", *Geneva Paper* 30과 OECD, *International Platform on Terrorism Risk Insurance*의 국가별 자료, 운영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표 3〉 미국 테러보험법 개정 현황

(단위: 달러)

| 구분 | 제정법 | 1차 개정법 | 2차 개정법 | 3차 개정법 |
|----------|--------------------------------------|---|---|---|
| | 2002. 11. 26~2005. 12. 31 | 2006. 1. 1~2007. 12. 31 | 2008. 1. 1~2014. 12. 31 | 2015. 1. 1~2020. 12. 31 |
| 법명 | Terrorism Risk Insurance of Act 2002 | Terrorism Risk Insurance Extension Act 2005 | Terrorism Risk Insurance Program Reauthorization Act 2007 | Terrorism Risk Insurance Program Reauthorization Act 2015 |
| 담보행위 | 외국인 테러행위에 한정 | 외국인 테러행위에 한정 | 국내인과 외국인 테러행위 구분을 삭제 | 2차 개정과 동일 |
| 담보지역 | 미국 | 미국 | 미국 | 미국 |
| 인정손해 | 5백만 | 5백만 | 5백만 | 5백만 |
| 정부보전 기준 | 5백만 | 2006: 5천만, 2007: 1억 | 1억 | 2015: 1억, 2020: 2억 (매년 2천만 증액) |
| 보험사 자기부담 | 2003: 7%, 2004: 10%, 2005: 15% | 2006: 17.5%, 2007: 20% | 20% | 20% |
| 정부보전 | 90% | 2006: 90%, 2007: 85% | 85% | 2015: 85%, 2020: 80% (매년 1% p 감소) |

주: 보험사 자기부담은 전년도 보유경과보험료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MARSH(2014), *2014 Terrorism Insurance Report*, p. 5 및 Baird Webel(2014, 2015), *Terrorism Risk Insurance: Issue Analysis and Overview of Current Program*,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를 참조하여 작성.

■ 정부와 보험회사 간의 위험분산체제는 다른 국가제도와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음.

- 2014년 기준을 보면 손해액 1억 달러까지는 연방정부의 지원없이 보험회사들이 부담해야 하며, 1억 초과 1,000억 달러까지의 손해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와 보험회사가 각각 85%, 15%를 분담하되 보험회사는 전년도 원수보험료의 20%를 360억 달러를 한도로 자기부담해야 함.
- 2014년 12월 3차 개정 시 정부가 보전하는 기준액 1억 달러를 2020년까지 매년 2천만 달러씩 증액하여 2억 달러로 하며, 정부보전비율은 2020년에 80%로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어 민영사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임.

나. 프랑스

■ 프랑스는 911테러 이전에도 잦은 테러로 인해 1986년에 보험법(article L.126-2)을 개정하여 상공업 물건과 자동차 물적손해에 대한 보험계약에서 테러리스크를 면책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2001년 911테러 이후 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 갱신할 때 테러리스크를 담보에서 제외시켰음.

- 이로 인해 상당수 상공업 계약자들은 테러리스크에 대해 무보험상태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1년 12월 보험회사와 정부가 논의를 거쳐 2001년 12월에 민관파트너십의 테러보험제도(이하 “GAREAT”라 함)를 도입했음.

- GAREAT는 강제보험으로 국내에 소재하는 상업 및 공업물건(특히 화학공장 생화학공장, 방사선 및 핵시설 포함) 중 보험가액이 600만 유로 이상⁹⁾인 화재보험계약에 첨부하며 재물손해와 기업휴지손해를 보상함.
 - 법에는 제외되어 있지만 자동차물적손해담보, 항공기기체보험(비영리 및 비상업적 용도로 가액 100만 유로 미만), 선박보험(바다, 호수, 내륙수로의 레저용으로 가액 100만 유로 미만)도 운영하고 있음.
 - 담보하는 테러행위는 더티폭탄(다이나마이트에 방사성물질 혼합), 생화학폭탄(biological or chemical), 핵무기를 포함하지만 사이버 리스크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대규모물건에 대한 재보험분산체계는 연간한도(annual aggregate limit)를 기준으로 6단계 초과손해액 형태의 체계를 지니고 있음(소규모는 5단계로 운영).
- 1단계인 손해액 5억 유로까지는 GAREAT에 참여한 원보험회사가 공동인수 형태로 보유하며, 이를 초과하는 2단계와 5단계까지의 24.2억 유로까지는 풀과 로이드 등 국제재보험에게 초과손해액 방식으로 분산됨.
 - 24.2억 유로를 초과하는 6단계의 경우에는 국영재보험회사인 Caisse Central de Reassurance(CCR)이 무한대로 부담함.
 - 재보험료는 원보험계약의 보험금액이 5억 유로 미만까지 12%, 5억 유로초과 시 18%를 적용하고 핵시설인 경우에는 24%를 적용함.

〈표 4〉 프랑스 테러보험의 재보험 체계(2015)

| 재보험 분산체계(연간한도) | | | 재보험료 | |
|----------------|------------------|--------------------------|----------------|-----------|
| 단계 | 손해액 | 인수보험사 | 보험금액 | 재보험율 |
| 1단계 | 5억 유로 이하 | 풀 참여 원보험사 및 재보험사 | 2억 유로 ~5억 유로미만 | 원보험료의 12% |
| 2단계~5단계 | 5억 초과~24.2억 유로까지 | GAREAT, 재보험사 (Lloyd's 등) | 5억 유로 이상 | 18% |
| | | | 핵시설물 | 24% |
| 6단계 | 24.2억 유로 초과~무한 | 국영재보험(CCR) | | |

자료: Willis(2013), *Terrorism Insurance Review*, pp. 23~24 및 OECD(2015), *France-Terrorism Insurance Program* 참조하여 작성.

9) 프랑스 테러보험제도는 보험금액 2,000만 유로를 초과한 계약을 대규모리스크(large risk)라 하고, 그 이하 계약을 중소규모리스크(small and medium size risk)로 구분하고 있으며 재보험분산체계도 각각 다르게 운영하고 있음.

다. 독일

- 독일 보험회사들은 911테러 이전까지는 상공업물건의 보험계약에서 추가보험료 부담 없이 테러리스크를 담보해 주었으나, 테러 이후에는 보험금액 2,500만 유로 이상인 상공업물건의 담보위험에서 테러리스크를 제외시켰으며 그 외의 계약에 대해서 추가보험료를 부담시켜 제한적으로 운영하였음.
- 보험업계와 연방재무성은 테러리스크의 보험담보에 대해 6개월간의 협의과정을 거쳐 2002년 9월에 새로운 손해보험공사인 Extremus AG를 설립하여 2002년 11월부터 임의보험으로 테러보험 풀을 시작하였음.
 - Extremus AG는 보험금액 2,500만 유로 이상인 상공업물건의 보험계약에서 재물손해와 기업휴지손해를 담보하며 인적손해와 배상책임보험은 제외됨.
 - 또한 계약당 또는 지역당 연간보상한도(maximum annual aggregate limit)는 15억 유로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보상한도액은 100억 유로로 운영함.
 - 담보하는 테러리스크는 독일 내 영토에서 발생한 것에 제한되며 24시간 동안 발생한 테러는 동일한 사고로 간주하는 “24 hours occurrence clause”를 운영함.
 - 제외하는 위험은 쟁의, 전쟁 및 민란, 사회적 불안, 몰수, 핵, 생화학, 오염, 컴퓨터바이러스와 데이터손실, 항공 및 해상임.
- 재보험 체계는 최종적으로 정부가 분담하는 3단계로 운영하고 있음.
 - 손해액 1.5억 유로까지의 1단계는 회원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1.5억 초과 2억 유로까지는 해외의 국제 재보험회사가 인수하며, 이를 초과하여 10억 유로까지의 손해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보장하는 유한담보체계(limited Coverage)임.
 - 정부의 재보험담보 제공은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효과와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여 연장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현재의 체계는 2015년 말까지 운영됨.¹⁰⁾

라. 영국

- 영국은 1993년부터 재물보험계약에서 테러리스크를 담보하기 위해 Pool Re를 신설하여 원보험회사의

10) Baird Webel(2014), *Terrorism Risk Insurance: Issue Analysis and Overview of Current Program*,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p. 14.

재보험담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최종 담보제공은 없음.

- 테러보험은 임의 가입이며 재물보험계약(건물, 완성구축물, 동산, 기계, 컴퓨터 등)의 한 부분으로 담보하며 기업휴지손해는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음.
 - 그러나 인적손해를 담보하는 건강보험과 생명보험, 선박보험, 항공보험, 운송보험, 자동차, 배상책임보험은 제외됨.
- 담보하는 테러리스크는 테러법(Acts of Terrorism 1993)에 따라 재무성 장관이 승인한 것에 한정하며 바이러스(해킹 등 유사한 행위)에 의한 컴퓨터시스템 손괴 등 사이버리스크는 면책이며, 생화학, 방사능, 핵오염은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재보험 분산체계는 특별히 한도를 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 보험회사의 담보력에 따라 Pool Re에 출재하고, Pool Re의 준비금을 초과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차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재보험료는 지역의 위험도에 따라 다른데 위험도가 낮은 지역은 0.03%, 높은 지역은 0.06%임.
 - 기업휴지보험은 지역별로 차등없이 0.021%로 동일하게 적용함.

4. 국내 테러보험 운영에 대한 시사점



- 국내의 테러리스크는 Institute for Economic & Peace(2014)가 분석한 것처럼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테러방지에 대한 국제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의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임.
 - 또한 국내에는 고층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테러가 발생한 경우에 재물손해와 인적손실이 매우 크게 발생할 수 있음.
- 국내의 테러보험은 911테러 이후 상공업물건에 대한 재물보험과 배상책임보험 등에서 전쟁 및 테러면책특약을 첨부하여 운영되고 있어 대부분의 계약자는 테러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최근 러시아 항공기와 프랑스 파리 시내에서의 연쇄적인 테러로 인해 정부는 2015년 11월 17일에 테러경보단계¹¹⁾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여 테러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동안 세 차례 입법논의 되었던 대테러방지법¹²⁾의 제정 공감대가 확산되어 가고 있음.

- 대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 등이 주요내용이 되고 테러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복구절차나 방법 등은 없는 상태임.
 - 2014년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은 대테러활동을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반활동으로 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대테러활동을 위한 정보수집 분석 배포를 규정하고 있으며, 신체 및 재산피해자에게 국가 및 지자체가 치료 복구비를 보조하고 장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¹³⁾
- 이에 따라 테러리스크는 대부분의 보험에서 면책으로 하고 있고 논의 중에 있는 대책법에서도 보험제도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의 테러가 발생한 경우 경제주체들은 큰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음.

■ 향후 테러리스크에 대한 보험제도 도입을 검토할 경우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관파트너십 형태의 테러보험제도는 국내에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표 5 참조).

- 보험제도는 다른 정책보험과 다른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민관파트너십 형태가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일정규모 시설물이나 건물 등에 대해서는 의무가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보험제도에서 담보하는 테러의 행위는 국가별로 보면 상이하기 때문에 국내의 상황에 부합하게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으나 일반적인 테러행위와 생화학, 방사능 등을 사용한 경우는 선택적 담보를 하고 사이버리스크의 제외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결정
- 정부의 재보험제공은 국내의 사고가능성과 손해액의 규모를 평가하여 손해보험회사의 담보력과 지급여력에 큰 영향이 적은 방향으로 정부의 재보험담보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거대손해인 원자력보험과 같은 기존 풀제도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kiri**

11) 테러경보는 대통령 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의거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 등 4단계이며, ‘경계’ 단계에서는 테러 취약요소에 대한 경비 강화 및 테러 취약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강화 조치 등이 내려지고, ‘심각’ 단계에서는 관계기관 공무원의 비상근무 및 테러사건대책본부 운영 등이 이루어짐. 조선일보(2015. 11. 19), “IS 폭파위협 소동 코엑스 ‘테러 경보 못들었다’ 일상적 경비”.

12) 16대 국회 테러방지법과 2009년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은 임기 만료되어 자동 폐기되었으며, 2014년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은 소관위에서 현재 심사하고 있음. 최근 2개 법안의 내용은 유사함.

13) 허영호(2014),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 검토보고서」, 국회 정보통신위원회.

〈표 5〉 주요국의 테러보험제도 운영체계 비교

| 국가별 | 미국 | 프랑스 | 영국 | 독일 |
|---------|--|---|---|--------------------------------|
| 플랫폼 | TRIP(2002) | GAREAT(2002) | Pool Re(1993) | Extremus AG(2002) |
| 담보 테러 | 정부가 승인한 테러행위이며 생화학, 핵, 방사능(BCNR)은 선택적 담보 | 형법상 정의한 테러행위로 핵, 생화학도 포함 | 재무성이 승인한 테러행위이며, 생화학, 핵, 방사능 사용 테러는 부보가능하나 사이버리스크는 제외 | 생화학, 핵, 사이버리스크 제외 |
| 가입 형태 | 임의보험 | 의무보험(1986), 소규모는 임의보험(보험금액 2,000만 유로 미만) | 임의보험 | 임의보험 |
| 적용 보험 | 상업용 손해보험(commercial property&casualty), 산재보험, 개인모기지보험, 권원보험, 금융보증보험, 의료과실보험, 건강 및 생명보험, 풍수해보험, 재보험 | 선박, 항공, 운송보험(철로)을 제외한 모든 재산 및 기업휴지보험 | 재물보험계약(건물 및 완성구축물, 동산, 기계, 컴퓨터), 기업휴지보험 | 재물보험(material damage) 및 기업휴지보험 |
| 적용제외 보험 | 상업용자동차, 도난강도보험, 전문인배상(임원배상 제외), 농장종합보험 | 인적손해(생명, 건강, 상해), 배상책임, 선박, 항공, 사이버보험, 도난 | 인적손해(생명, 건강보험), 선박, 항공, 운송보험, 자동차 제외 | 인적손해 및 배상책임보험 등 |
| 재보험 제공 | 100만 달러 초과손해에 대해 85% 제공(2020년 80%) | GAREAT: 24.2억 유로까지 CCR: 24.2억 유로 초과 무한담보제공 | 풀의 한도는 없으며 정부 차입 가능 | 20억 초과 80억 유로까지 국가 제공 |
| 재검토일 | 2020. 12. 31 | 2018. 1. 1 | 영구존속 | 2015. 12. 31 |

주: 프랑스의 경우 소규모물건에 대한 재보험은 다른 한도로 운영.

자료: OECD, *Terrorism risk insurance programmes by country*

(<http://www.oecd.org/finance/insurance/terrorism-risk-insurance-programmes.htm>).